

## 화물조업주차관련제도 개선방향

### How to Improve Freight-related Parking System?



박동주



김도경



하오근



오정택

#### 1. 서론

우리나라의 화물조업주차 문제는 도심지의 대규모 상업지역 및 재래상업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 주변도로의 교통정체 및 보행환경 악화와 같은 도시교통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현재의 화물자동차 조업주차와 관련된 주차장 건설은 현행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화물조업에 대한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을 적용하고 있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에서도 서비스 차량 및 화물차량에 대한 배려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조업주차구획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화물자동차 조업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도심내 불법 조업활동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적 단속 강화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조업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물조업주차관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불법 조업주차 및 단속 현황을 통하여 조업주차에 대한 현 상태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단속현황을 진단한다. 둘째, 화물자동차 조업주차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외국의 조업주차 설치기준 및 정비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업주차 법제도 및 개선대책 수립시 착안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화물조업주차장 제도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과 건축물 부설, 노상·노외 화물

박동주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정교수, djpark@uos.ac.kr, 직장번호:02-2210-5708, 직장팩스:02-2210-2652

김도경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조교수, dokkang@uos.ac.kr, 직장번호:02-2210-5739, 직장팩스:02-2210-2652

하오근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hok0809@hanmail.net, 직장번호:02-2210-2187, 직장팩스:02-2210-2652

오정택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otheque@naver.com, 직장번호:02-2210-2187, 직장팩스:02-2210-2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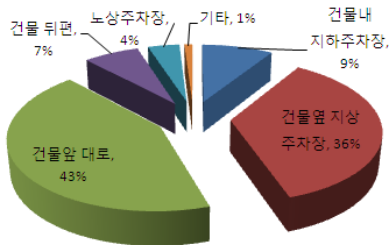
조업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정립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법제도측면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화물조업주차 효율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불법 조업주차 및 단속현황

### 1. 불법 조업주차 및 단속 현황

#### 1) 서울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현황

서울시 10개구(강남, 강동, 관악, 동대문, 마포, 서초,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654개 건축물의 화물조업주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물조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건축물 앞 대로'가 전체의 43%로 가장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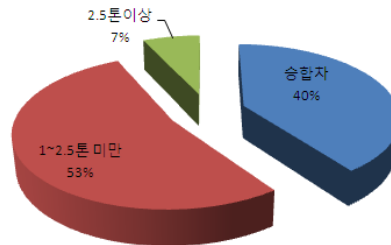


〈그림 1〉 화물조업 장소

것으로 나타나 건물 앞 도로상에 화물자동차를 불법 주차함으로써 주변도로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물조업시 사용하는 차량을 살펴보면 1~2.5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조업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내 화물은 소량 다빈도 이동특성에 따른 소규모 화물차를 이용한 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2)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화물조업주차 확보 현황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화물조업주차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승용차 대비 화물차 주차공간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효율적인 조업활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함으로 시사하고



〈그림 2〉 화물조업 차종

자료 : 이우승, 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화물조업주차 확보 현황

용도별	건물수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연상면적(m <sup>2</sup> )	법정주차	조업주차	화물/승용
업무시설	205	1,648,782	676,319	11,650,820	61,753	48	0.06 %
판매시설	63	611,436	256,528	3,075,344	16,441	250	0.73 %
공동주택	22	49,122	26,334	1,235,810	43,705	0	0.00 %
교육연구시설	3	11,623	4,784	181,287	826	0	0.00 %
숙박시설	14	375,058	70,776	667,206	2,728	10	0.22 %
종교시설	16	72,155	32,019	397,706	1,746	0	0.00 %
의료시설	10	247,870	60,197	380,314	2,344	0	0.00 %
문화 및 집회시설	12	318,556	121,807	407,713	1,965	2	0.06 %
예식장	11	38,474	15,140	67,248	1,392	0	0.00 %
위험물판매시설	1	-	-	1,177	6	0	0.00 %
운수시설	5	79,498	19,415	226,204	275	0	0.00 %
공장시설	6	-	-	554,604	2,333	0	0.00 %
계	368	3,452,575	1,283,318	18,845,434	135,514	310	0.21 %

자료 : 이우승, 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 몇몇 시설물의 경우 조업 주차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건축물의 화물조업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2. 동대문상가 조업주차 현황

### 1) 동대문 상권현황

동대문 상권은 의류, 패션잡화 품목의 화물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권역으로 서부 재래상권, 서부 소매상권, 동부 재래상권, 동부 신식상권으로 4개의 상권으로 구분된다. 4개 상권의 지리적 위치 및 유형, 주요상가, 취급품목의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 2) 상가별 물류시설 현황

동대문 4개 상권 물류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조업전용 주차장의 부재이다. 대부분의 조업활동이 노상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물조업을 위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대문상가 주변도로는 불법조업활동 화물차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자동차 조업공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 3. 단속현황

도로상의 화물조업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주·정차금지 장소 특례)에 의한 노상조업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교통혼잡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주·정차 필요지역을 일부 지정하고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 주차(10:00~17:00, 15분)를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업주차 단속을 위한 조치사항은 <표 3>과 같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물조업주차 단속기준의 문제점은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화물조업주차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이다. 또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조업주차의 허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림 3> 동대문 상가 상권현황

자료 : 서울시립대학교(200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

〈표 2〉 동대문 상가별 물류시설 및 조업주차현황

상권	상가명	조업전용주차장	조업 실태	상가자체 참고	비고
서부 소매 상권	두산타워	없음	- 지하 및 노외 일반주 차장에서 조업	- 지하에 존재(향후 규모 확인 예정)	- 서부소매상권의 물류활동 은 큰 불편 없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케레스타가 가장 모범적 형태입(건물 내에서 모든 물류활동이 가능)
	밀리오레	없음	- 지하 일반주차장에서 조업	- 지하에 존재(향후 규모 확인 예정)	
	케레스타	있음, 지하 200평~300평	- 지하 조업주차장에서 조업	- 5~13평의 110여개 창고가 지하에 있음	
	헬로APM	없음	- 지하 일반주차장에서 조업	- 지하에 존재(향후 규모 확인 예정)	
서부 재래 상권	동화시장	없음	- 노상에서 불법조업	- 일부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	- 청계천변 및 건물 주변 노 상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 어 짐 - 인도에 물건을 쌓아 둠
	평화시장	없음	- 노상 주차장 및 노상 에서 조업	없음	
	통일상가	없음	- 노상에서 불법 조업	없음	
동부 재래 상권	신평화시장	없음	- 건물 주변에서 불법 노상 조업 - 노상 주차장에서 조업	없음	- 조업공간이 부족함 - 청평화시장은 야간에 성동 공고의 운동장을 주차장으 로 이용하고 있음 - 주차장이 존재하지만 조업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 - 노점상으로 인한 주차장 접근이 불편함
	청평화시장				
	동평화시장				
	광희패션몰				
	제일평화시장				
남평화시장	- 부설주차장에서 조업				
동부 신식 상권	누존	없음	- 주차장이 있으나 조 업 주차장으로의 활 용도가 낮음 - 주로 노상에서 불법 조업이 이루어짐	없음	- 건물앞 노상에서 화물버스에 의한 활발한 조업활동 발생  -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조업 활동 발생
	디자인너클럽				
	유어스				
	아트프라자				
	APM				
	Area6				
	혜양엘리시움				
테크노상가	있음	- 지하에서 모든 조업 이 이루어짐	있음	- 상·하역데크가 설치되어 물류활동에 지장 없음	
디오트					

자료 : 서울시립대학교(200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

〈표 3〉 지방자치단체별 조업주차 단속현황(기준)

지방청	고시여부	비고
서울	지방청장 고시	- 1,874개 구간 389.2km
부산	지방청장 고시	-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3차로이상 5차로 이하 도로
		- 중앙선이 없는 폭 5m이상 도로
대구	지방청장 고시	- 전지역 원칙적 허용
인천	지방청장 고시	- 전지역 원칙적 허용
광주	고시 ×	- 12개 구간, 3.2km 별도 표지 설치 허용
대전	지방청장 고시	- 10개 구간 7km
울산	지방청장 고시	- 전지역 원칙적 허용
경기	지방청 위임, 경찰서장 고시	- 25개 구간 17km
강원	고시 ×	- 전구간 단속 유예
충북	고시 ×	- 전구간 단속 유예
충남	고시 ×	- 14개 구간 3.2km 별도 표지 설치 허용
전북	고시 ×	- 9개 구간 3.78km 별도 표지 설치 허용
전남	고시 ×	- 5개 구간 1.9km 별도 표지 설치 허용
경북	고시 ×	- 17개 구간 13.1km 별도 표지 설치 허용
경남	지방청장 고시	- 정차구간: 427개소 312.69km - 주차구간: 1219개소 909.17km
제주	고시 ×	- 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이관 업무, 허용구간 없음

#### 4. 기타현황

〈표 4〉 불법 조업주차 사례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동대문			
	도로의 화물적치	보도의 화물적치	보도의 화물적치
을지로	사례 4	사례 5	사례 6
			
	도로변 불법 주·정차	도로변 불법 주·정차	도로변 불법조업활동

자료 : 서울시립대학교(200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

〈표 5〉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관련 법제도

구분	세부내용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 비고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 (중략)....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	제9조(사업지 내부 교통개선방안) 제1항(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27호) 사업지 내부 교통체계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차량 및 화물차량에 대한 배려 (주 이용 화물차량, 셔틀버스의 규격 및 수요를 고려한 주차면수, 주차면 규격, 주차동선, 통로규격 - 회전반경, 높이, 폭원 등 제시)										
화물조업주차구획 세부설치 기준 (서울시, 2007년 10월 이후)	-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기준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주차대수 내에서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 시설용도별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승용차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백화점 및 할인점</td> <td>시설면적 1,000m<sup>2</sup> 당 1대</td> </tr> <tr> <td>판매시설</td> <td>시설면적 2,000m<sup>2</sup> 당 1대</td> </tr> <tr> <td>산업시설(공장, 창고 등)</td> <td>시설면적 3,000m<sup>2</sup> 당 1대</td> </tr> <tr> <td>기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td> <td>시설면적 4,000m<sup>2</sup> 당 1대</td> </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승용차 기준)	백화점 및 할인점	시설면적 1,000m <sup>2</sup> 당 1대	판매시설	시설면적 2,000m <sup>2</sup> 당 1대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시설면적 3,000m <sup>2</sup> 당 1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	시설면적 4,000m <sup>2</sup>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승용차 기준)										
백화점 및 할인점	시설면적 1,000m <sup>2</sup> 당 1대										
판매시설	시설면적 2,000m <sup>2</sup> 당 1대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시설면적 3,000m <sup>2</sup> 당 1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	시설면적 4,000m <sup>2</sup> 당 1대										
자치구 건축과의 규정/적용실태	건축 인허가시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그 규모가 소규모 (연면적 1,000m <sup>2</sup> ~2,000m <sup>2</sup> )이고,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조업 주차 등)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주차장법에서는 명확하게 조업주차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기준하여 법적 주차 대수 이상 확보하여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음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주차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로의 화물적치, 보도의 화물 적치, 도로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이며, 이러한 것들은 주변도로의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 III. 조업주차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관련

#### 1)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업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관련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주차장법,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가서 작성지침 등 다양한 법제도가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 2)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관련 법제도 문제점

현재 시행중인 법제도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표 6> 노상·노외 조업주차장 관련 법제도

구분	세부내용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노상화물조업주차장 관리 조례 및 설치사례	제7조의 2(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신설 1993.7.3)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7.3)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7.3)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5)

조업주차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형식적인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대상 기준이 없다. 둘째,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설치대수)이 승용차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미국사례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기준(설치대수)이 없다. 넷째, 자치구 건축과에서는 소규모(1,000m<sup>2</sup>~2,000m<sup>2</sup>) 근린시설의 화물조업주차장설치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여객용 자동차의 수요와 화물자동차의 수요를 별도로 추정해야 하나, 차종구분 없이 총 수요를 추정한 후 사업자(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화물조업주차면수를 결정하고 있다.

## 2. 노상·노외 조업주차장 관련

### 1) 노상·노외 조업주차장 법제도 현황

노상·노외에서 발생하는 조업주차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는 국토해양부의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시의 노상화물조업주차장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 2) 노상·노외 조업주차장 법제도 문제점

노상·노외 조업주차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은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화물조업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조업주차구획의 필요규모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실적인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업주차가 발생하는 지역특성 및 물동량을 기반으로 한 조업주차구획의 규모 및 설치기준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

## IV. 외국의 조업주차 설치기준 및 정비사례

### 1.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 1) 일본

일본의 조업주차 설치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규모 상점 및 상업지구 내 건축물 신설의 경우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점포 개점시간을 고려한 화물조업을 전용주차공간 및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업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 2) 기타 해외사례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업주차 설치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와 민간부분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조업지역에 대한 지정 및 규정을 수립하고 민간은 건축

<표 7> 일본의 조업주차 설치기준

구분	내용
건축물부설주차장조례	- 화물조업주차장설치 의무화 · 대규모 상점 등을 신설하는 경우 · 지방공공단체가 주차장정비지구 또는 상업지구 내지 근린상업지구에서 건축물 신설하는 경우 - 1994년 건설성에 의해 화물차에 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의 의무조례 기준 정립 - 1999년 9월 22개 시에서 화물조업을 위한 부설의무주차장조례 제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도로의 이용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1998년 제정 - 조업주차시설 정비에 대한 규정 · 화물의 조업활동시, 주변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차량을 주차해둘 공간위치에 대한 확보를 해야 함 · 점포 개점 시간대에 화물조업을 위한 반·출입차량 전용주차 공간 확보 및 전용출입구 설치

자료 : 이우승, 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표 8〉 국외 조업주차 설치기준

국가/도시	시행주체	내용
미국	정부	- 대다수의 도시들이 후면도로 화물조업지역을 제공 - 화물조업주차 제한시간 규정
일본 Kanazawa	정부	- 후면도로 화물조업을 위한 공간과 운송을 위한 특정 후면도로에서 사라진 주차제한 규정 제공 - 빌딩 소유자와 협의하여 화물조업이 요구되는 공간 추가 제공
일본 Tokyo	민간	- 개정된 주차 단속규정에 따라, 총 층수 면적이 이상 되는 빌딩은 후면도로에서 화물조업을 위한 공간제공
일본Tokyo (Nihonbashi)	지방정부	- 하역공간 : 일반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상 자유주차 규정을 달리 함 - 화물조업이 이루어지는 운송을 위한 루트 지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루트위에 트럭이 주차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 함
벨기에	정부/민간	- 정부 : 거의 모든 도시는 특별한 노상주차구역 제공 - 민간 : Brussels(계획 중) 중요한 경제와 산업에서 그들의 후면도로 운송구획을 계획(빌딩 허가권을 얻기 위한 조건)
프랑스	정부/민간	- 정부 : 여러 곳의 타운에서 실험되고 있음 (거주자 100명 이상은 모든 타운) - 민간 : Paris(1900-): 250m <sup>2</sup> 이상 규모의 새 빌딩은 후면에 화물조업 공간 제공

자료 : 이우승, 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물 개발시 화물조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동경로 및 주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내 조업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외국의 조업주차 정비사례

외국에서 발생했던 조업주차 문제점들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조업주차 문제점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 조업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에 옮김으로써 조업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조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조업주차 정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트럭 주차허용시간 축소를 통한 공간활용 및 주차회전을 제고, 노외하역시설의 의무화, 주차예약시스템을 통한 조업주차 관리, 트럭타임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차공간을 승용차와 화물차량이 시간대를 나누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V. 제도개선방향

### 1. 기본방향

우리나라 화물조업주차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5개 카테고리별로 구분된다. 첫째, 조업주차장 정비시 입체적(점, 선, 면)접근의 필요성, 둘째, 새로 신축하는 신규건축물에 대한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정립, 셋째, 조업주차장이 없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 넷째, 빌딩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및 소규모 상가지역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도심재래상업지구에 대한 대책이다. 화물조업주차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카테고리별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은 〈표 10〉과 같다.

### 2. 건축물 부설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정립방향

건축물 부설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의 정립을 위해서는 첫째, 건축물 용도별·면적별 의무대상 면적 및 적정 주차면수 결정을 위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물



〈표 9〉 외국의 조업주차 정비사례

국가	도시	문제점	정비 내용
미국	달라스	- 노상공간에서 조업으로 인해 보행자와의 갈등, 불법적 공간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함 - 운송업자는 공간부족이 심각함 - 노외공간이 확보된 경우도 공간부족이나 부적절한 설계 등으로 불편이 야기됨	- 노외하역존에 대한 법령을 새롭게 정비 - 지하트럭터널을 건설(Dallas Burlington truck tunnel)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 운송시간의 제한 - 노외 조업주차시설 부족 - 운송차량의 주차위반	- 노외하역존의 존구획을 위한 새로운 법령의 지정 - 커브관리전략의 수립(차량에 대한 조업허가증 교부) - 공동집배송 체계의 구축
	맨하탄 의류상가	- 화물활동이 활발하고 혼잡이 극심함 - 혼잡으로 인한 환경악화 - 물류비용이 높음	- 노상주차금지를 위해 교차로부근의 좌회전차선 설치 - 트럭의 최대주차허용시간을 축소하여 공간 활용 및 주차회전율을 높임 - 공동수하공간의 확보 - 주차예약시스템, 고가 및 지하 컨베이어시스템 도입
	시애틀	- 도심교통혼잡 - 조업주차시설부족 - 무질서한 주차	- 주차장 정비기금설치 - 노외하역시설의 의무화(신규개발에 대하여 용도 및 상면적에 따라 서비스 차량용 노외하역공간의 확보 의무를 두고 있음)
일본	도쿄	- 교통혼잡 - 환경관련문제	- 물류밀집지구내의 간선도로상에서 정차허용
	북강시 천신지구	- 조업주차공간의 부족	- 하역베이 설치/loading zone) - 주차공간사용을 승용차와 화물차량이 시간대를 나누어 사용
	일본교횡산정	- 만성적 교통혼잡 - 지구내 주차구획비율이 적어 노외 주차 및 하역공간의 확보가 어려움	- 트럭타임플랜
	남동경 네리마쿠시코꾸 지역 다까마츄시	- 교통혼잡 - 하역공간 부족	- 포켓로딩시스템 -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히라즈가 역전앞 상가	- 주변 교통환경변화로 교통량 및 상가이용객 감소	- 물의 보행자공간에 부분적으로 조업주차베이를 정비하여 운영중
독일	엠펜시	- 조업주차공간의 부족	- 보행자와 교통량이 적은 보도를 이용하여 보도에 조업전용 주차베이 정비
	베를린	- 조업주차공간의 부족	- 포츠다머 플라츠 지하물류처리시스템 구축
프랑스	파리 - 포럼 디 아르 지하공동화물 하역장	- 시장을 이전한 결과 국가와 시에 의해 재개발 계획이 수립됨	- 도로는 지상부를 피하여 지하에 4.5km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지하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700대를 넘고 있음 - 화물의 하역장은 이 지하도로에서 분기한 곳에 위치하여 지하점포와의 사이에 상품 상하역을 행함 - 이들의 물류에 대한 사고방식은 "지상은 공원화 한다"고 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화물하역장의 주정차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있음
	파리 - 배달차량 존	- 일반승용차와의 마찰 - 조업주차공간의 부족	- 일반차량용 주차공간 10면 10m의 공간에 조업용 정차를 가능하게하여 상하역을 위한 노측 이용을 공인함 - 또한 조차금지 지구로부터 20m~25m떨어진 곳에 배달차량용 존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조업주차 가능함

자료 : 황기연(1998), 서울시 화물자동차 조업주차 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10〉 화물 조업주차장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대상	기본방향	세부내용
점·선·면 차원의 접근 필요	점(店)적인 접근	- 개별 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의 점(店)적인 접근
	선(線)적인 접근	-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선(線)적인 접근
	면(面)적인 접근	- 지구나 지역관리 차원의 면(面)적인 접근
신규건축물	조업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선정기준 정립	- 지역별 및 용도별 특성 반영
	적정 조업주차면수 산출기준 정립	-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화물조업주차장의 설치 기준 정립	- 적정위치 및 동선계획 - 주차면의 크기 - 관련시설물(예: 하역데크, 화물전용엘레베이터 등)의 설치 규정 등
기존건축물	조업주차장이 없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	- 건물 앞 보도에 대한 Set back을 통한 공동 조업 주차공간 확보 - 건물 앞 또는 건물 뒤 도로상에 공동 노상조업주차장 공급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다양한 사례 연구 후 적용 가능한 모델 도출 필요
빌딩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및 소규모(전문) 상가지역	이면도로 및 소규모 상가지역의 설치방향 정립	- 『주차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운영관리정책 필요 - 예 : 노상화물조업주차구역 확보, 공영노외화물조업주차공간 확보 등
도심재대상업지구	시설별 화물흐름 특성을 감안한 개선방향 정립	- 화물 및 화물자동차 유·출입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강구 - 예 : Dallas의 Burlington Truck Terminal, Berlin의 포츠담 플라츠 지하물류시스템

〈표 11〉 건축물 부설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정립방향

정립방향	세부내용
건축물 용도별·면적별 의무대상 면적 및 적정 주차면수 설정	- 대도시권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면적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건축물을 조사 후 원단위를 산출해야 함 - 회전율, 조업의 시간대별 분포를 감안함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화할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설치면수 결정
화물조업주차장 적정위치 및 동선체계	-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장의 적정 위치 가이드라인 필요 - 여객용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상충 및 화물엘레베이터와의 연계 등을 감안한 화물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동선계획 제공 필요
화물조업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규정	- 접근로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폭, 너비, 높이, 회전반경, 조업공간 크기 등)에 대한 규정 - 하역대 및 화물엘레베이터의 설치 기준 등

차 통행량, 시간대별 분포 등을 감안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장의 적정 위치 및 화물자동차 동선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화물조업주차장을 구성하는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조업활동의 표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 3.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의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정립방향

노상 및 노외 화물조업주차장은 주변 건축물의 규모가 작거나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차의 조업활동을 위한 필요면수에 대한 기준과 주차장 관련 시설물의 설치 규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 12〉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정립방향

정립방향	세부내용
화물조업주차장 필요면수 기준정립	- 주변 건축물의 규모가 작거나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법조업주차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화물조업주차장 필요면수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규정 정립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조업주차장의 적정위치 및 동선체계,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
기타	- 서울시의 주택가 이면도로정비사업, TIP 사업 등

〈표 13〉 법제도 개선방향

구분	현행법	개선방향
설치의무	- 주차장법 제19조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관련 선언적 의무만 부여	- 건축물 내 화물조업자동차를 위한 화물조업 주차장설치의 의무화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 사업주의 판단에 따름	- 적정 조업주차장 설치면수 산정방식 및 설치기준 제시
전용구획화	-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차량에만 전용구획화	- 화물조업자동차를 위한 전용구획화 추가
화물조업주차장 지도감독방안	- 별다른 규제방안 없음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시 화물조업주차면을 설치한 후 신고도록 함 - 신규건축물: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화 · 교통영향분석대상 건축물은 교통영향분석심의시 · 나머지 건축물은 건축물 건축 허가시

자료 : 이우승, 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일부 수정보완함

#### 4. 법제도 개선방향

화물조업주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설치의무 측면에서는 현행 주차장법 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이다. 둘째, 화물조업주차시설기준 측면에서는 현행의 사업주 판단에 의한 시설설치가 아닌 조업주차장 적정 설치면수 산정방식 및 설치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용 구획화 측면에서는 현행 경차 및 장애인차량 전용구획화를 화물조업자동차를 위한 전용구획화 추가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조업주차지도감독방안에 대한 신설조항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신규 건축물의 화물조업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 5. 단계별 추진방향

앞서 제시한 화물조업주차 제도개선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은 〈표 14〉와 같다.

#### VI. 결론

본고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조업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조업주차 및 단속현황과 화물자동차 조업주차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를 통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화물조업주차 선진화를 위한 화물조업주차관련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4〉 단계별 추진방향

구분	세부내용
1단계 : 신규건축물에 대한 조업주차설치기준 정립	- 조업주차 설치대상 건축물(예: 용도별 연면적) 결정 - 용도별/지역별 조업주차 설치면수 기준 정립 - 특히 교통영향분석대상 건물의 경우 - 법제화
2단계 : 대규모 도심재래상업지구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	- 남대문시장 및 동대문시장 주변 등 - 10여개 이상의 대상지를 조사 후 유형화 및 유형별 정비방안 도출 - 2~3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실시 후 전국적 확대 - 시범사업 후 법제화
3단계 : 이면도로 및 소규모(전문) 상가지역	- 20여개 이상의 대상지를 조사 후 유형화 및 유형별 정비방안 도출 - 4~5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실시 후 전국적 확대 - 시범사업 후 법제화

도심지 화물조업주차 및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문제점은 건축물의 화물조업주차공간의 미확보로 인하여 건물주변 도로상에서 대다수의 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의 화물조업주차 단속기준은 조업주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주차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조업주차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형식적인 법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물조업주차장에 대한 필요규모와 설치기준의 부재이다.

국외의 경우 화물조업주차문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적절한 위치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업주차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조업지역에 대한 지정 및 규정을 수립하고 있고, 해당지역의 화물이동특성을 고려하여 트럭타임플랜, 주차예약시스템을 통한 조업주차 관리, 시간대별 주차장 사용과 같은 다양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물 조업주차장 제도개선을 위해 입체적(점, 선, 면) 접근, 신규건축물, 기존건축물, 빌딩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및 소규모 상가지역, 도심재래상업지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건축물 및 노상·노외 화물주업주차장 설치시 적정 주차면수 설정, 적정위치 및 동선계

획, 시설물 설치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화물조업주차장 법제도 개선방향은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화, 주차장 설치면수 산정방식 및 설치기준, 화물조업자동차를 위한 전용 구획확보, 화물조업주차지도감독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물조업주차관련제도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존·신규 건축물의 화물조업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화물조업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설치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도심내에서 운행되는 조업차량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화물조업주차장 특성 및 수요예측이 수반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황기연(1998), 서울시 화물자동차 조업주차 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이우승·김도경(2006),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서울시립대학교(200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
4. 법제처(<http://www.moleg.go.kr>)